

제2차산업경제위원회  
2015.1.28(화) 14:00

충청북도 지역전통주 산업육성 및 소비문화 장려 조례안

# 검 토 보 고 서



산 업 경 제 위 원 회  
수석전문위원 신선기

# 충청북도 지역전통주 산업육성 및 소비문화 장려 조례안 검 토 보 고

1. 발의자 : 박우양 의원 등 7명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발의일자 : 2015년 1월 19일

나. 회부일자 : 2015년 1월 20일

3. 제안 이유

- 전통주 산업은 농업의 부가가치 증진은 물론 도내 농산물의 안정적인 수요처로서 이의 육성과 지역 전통주 육성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랑 정신을 고취코자 하는데 있음.

4. 주요내용

- 가. 도지사는 지역전통주 산업육성과 소비촉진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 및 지역 전통주 활성화에 노력(안 제3조)
- 나. 제조업자는 지역전통주 품질향상 및 소비촉진을 위한 도정시책에 적극 참여·협력(안 제4조)
- 다. 도민은 지역 전통주를 이용한 건전하고 품위있는 술 문화 정착 노력(안 제5조)과 도지사는 공식행사에서의 지역 전통주 우선 이용 노력(안 제6조)
- 라. 도지사는 지역 우수 전통주 홍보를 위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(안 제7조)

5. 검토의견

- '충청북도 지역전통주 산업육성 및 소비문화 장려 조례안'은 전통주

산업 육성을 통해 농업의 부가가치를 증진하고 도내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적극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랑 정신을 고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 제정은 타당함.